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디자인공보(S)

(45) 공고일자 2022년07월15일
(11) 등록번호 30-1173102
(24) 등록일자 2022년07월12일

(51) 국제분류 24-01
(21) 출원번호 30-2021-0031617
(22) 출원일자 2021년07월02일

(73) 디자인권자

이성호

경기도 광명시 서원로 25, 204동 404호 (소하동,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72) 창작자

이성호

경기도 광명시 서원로 25, 204동 404호 (소하동,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74) 대리인

이용하, 전중학

담당심사관 : 김영삼

(54) 명칭 LED 광치료기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24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LED 광치료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임.
2. 본 디자인은 LED 광치료기에 관한 것으로, 기기 안쪽에 배치된 LED에서 나오는 광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신체 예를 들어 두피의 중앙 부분, 얼굴 부분, 무릎과 같은 관절 부분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것임.
3. 본 디자인은 모발성장촉진, 피부관리, 관절관리에 사용되며 원하는 특정 부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본 디자인을 이동시켜 장치 그대로 혹은 더 넓은 빛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펼쳐서 사용할 수 있음.
4. 본 디자인은 폐쇄적인 형태가 아닌 개방적인 형태로 기기 사용시 발생하는 열의 방출이 가능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5. 본 디자인은 헤어밴드의 기본형식에 앞 뒤로 돌출된 형상을 가지며 이 모든 부분에는 기기 안쪽에 LED가 배치되어 있으며 머리를 원하는 신체부분에 두르는 형식의 제품으로 사용시 이용자 신체에 중앙밴드를 장착시킨 후 전원을 연결하여 불빛이 발광되는 부분을 신체에 향하도록 고정하여 사용하며 더 넓은 빛의 조사를 원할 경우 양쪽클립을 분리하여 넓게 편 후 사용하는 것임.
6.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가 표현된 도면이고, 도면 1.2는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이 표현된 도면이며,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이 표현된 도면이고,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좌측 부분이 표현된 도면이며,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우측 부분이 표현된 도면이고,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이 표현된 도면이고,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저면 부분이 표현된 도면이고, 참고도면 1.1은 도면 1.1을 펼친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LED 광치료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참고도면1.1

